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2023. 10.



KoNIBP
재단
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반부패 청렴메시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간 존엄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 터 넷 국가생명윤리정책원_클린신고센터(www.nibp.kr/xe/clean)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04522)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경영관리본부
- 이메일접수 gapjil@nibp.kr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부패신고는 '22.7.5.부터 적용)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신고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정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대한 개정 안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으로 확대 (2023. 9. 22. 시행)

*지급대상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의 지급 제한 대상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
(2023. 6. 22. 시행)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제30조 3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제17조 7항